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ISP의 책임을 명확히 하다

최푸름 | University of Debrecen, LL.M



2020년 8월,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있어 ISP가 자신의 서비스 가입자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책임을 저버리고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면, ISP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고 판시함.

배경

- 원고는 미국 내의 대다수의 음악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음반 산업 단체이며, 피고는 미국의 ISP 업체와 ISP의 경영·마케팅 컨설팅을 맡은 회사임.
- 원고는 피고가 허가되지 않는 공중에게 BitTorrent(이하 ‘토렌트’)를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물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토렌트’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전문 저작권 관리 업체를 고용함. 전문 저작권 관리 업체는 저작권이 무단으로 유통

되는 데 이용된 IP 주소와 ISP 등을 수집하여, DMCA에 의거하여 피고 측에 저작권 침해 통지 및 게시 중단을 요청함.

-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저작권 관리 업체를 통해 피고 측에 500만 건 이상의 게시 중단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데 있어 매우 소극적이었음.
- 또한 피고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고객의 계정을 해지하거나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저작권 보호 정책은 ‘영터리’라고 주장함.
-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자신들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냄. 자신들은 가입자에 대해 그들을 감독할 권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부정함.

관련 법령 및 판례

- Metro – Goldwyn – Mayer Studios Inc. v. Grokster, Ltd 판례에 의하면, Peer-to-peer 서비스를 통해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방조 책임을 짐.

뉴저지 지방 법원의 판결

- 법원은 피고의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상당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함.
- 첫 번째로, 지방 법원은 피고가 가입자의 행위를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피고는 이에 대해 자신들에게는 서비스 가입자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만 있으므로 실질적인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가입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기각함.

- 두 번째로, 법원은 피고의 서비스 가입자에 의한 불법 저작물 이용으로 인해 피고가 금전적인 이득을 누렸다고 판단함. 가입자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 있어 피고의 서비스를 통해 파일을 불법 공유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의 해 이는 곧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의 서비스를 이용할 근거를 주었으므로, 피고에게 간접적인 이득을 불러왔다고 판시함.

평가 및 전망

- 상기 판결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DMCA의 Notice and Takedown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ISP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참고 자료

<https://dockets.justia.com/docket/new-jersey/njdce/3:2019cv17272/415615>